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보조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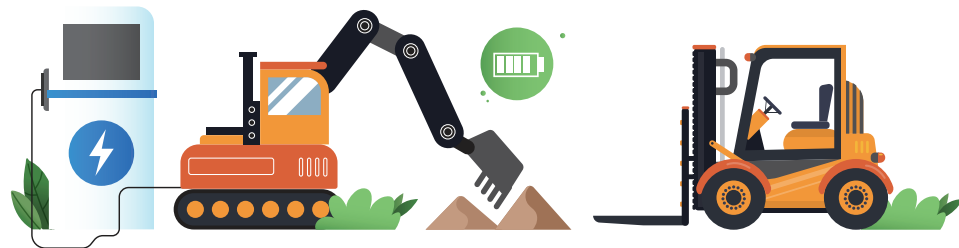


전기굴착기(케이블형)

제조·수입사	기종	정격출력(kW)	총중량(톤)	보조금(만원)
볼보그룹코리아	EC300F	185.0	35.14	5,000
HD현대인프라코어	DX240LCE	132.0	24.3	3,820
	DX300LCE	160.0	31.8	4,760
	DX320LCE	200.0	32.86	5,000
	DX400LCE	250.0	43.39	5,000
	DX550LCE	300.0	56.32	5,000
	DX550LC-7	300.0	56.39	5,000
HD현대건설기계	ROBEX300LC-E	160.3	31.35	4,730
	HX520AE	270.0	54.33	5,000
금강중공업	SD220D-2	89.8	22.56	3,180
	SD300E	131.7	30.39	4,310
	SD360C-3	184.6	36.49	5,000

수소지게차

제조·수입사	기종	정격출력(kW)	적재중량(톤)	보조금(만원)
두산밥캣코리아	B30X-7 Plus	20	3	16,000
	B35X-7 Plus	20	3.5	16,000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보조금 신청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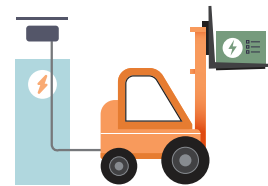
1	구매계약 체결	보조금 지원 대상 건설기계를 구매하려는 자는 건설기계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2	지원신청서 접수	구매자는 구매지원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지자체에 보조금 지원 신청
3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지자체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4	건설기계 출고 및 신고	2개월 이내 무공해건설기계가 출고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혹은 대기자로 변경 가능
5	건설기계 등록	구매자는 제작·수입사에게 대금(보조금 공제 후 금액) 납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하여 지자체에 건설기계 등록
6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제작·수입사는 구매자의 무공해건설기계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관련 증빙서류 제출
7	보조금 지급	지자체는 제작·수입사에서 제출한 증빙서류 검토 후, 제작·수입사가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지자체 문의처

※ 지자체별 지원 기간, 사업예산 등 세부사항

지자체	부서	연락처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02-2133-4436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558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	031-8008-5719



무공해건설기계 제조사별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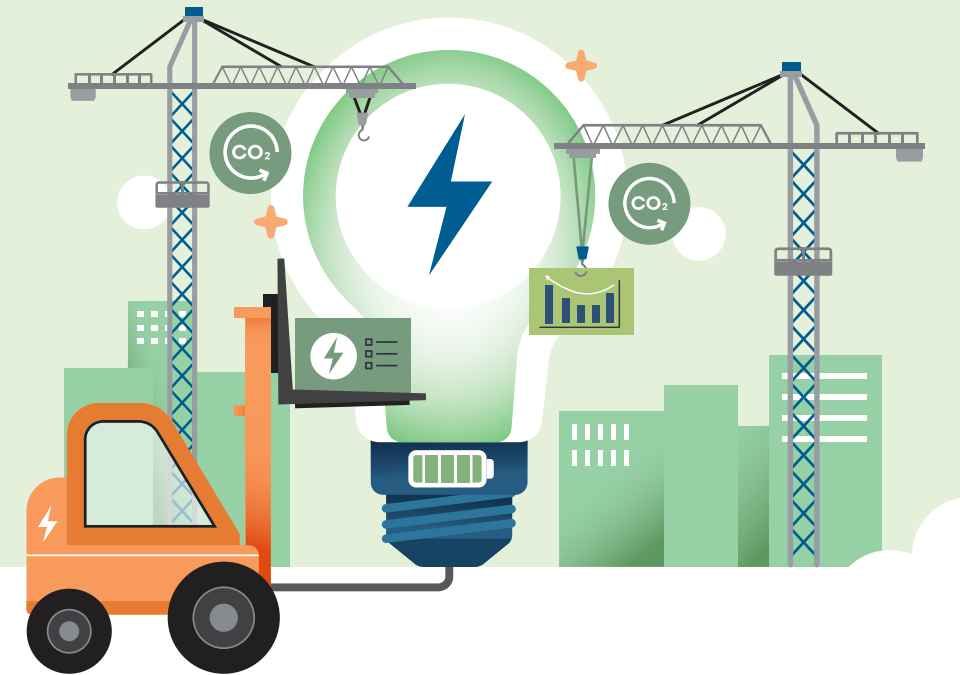
업체명	연락처
(주)호룡	063-540-5500
HD현대인프라코어	1600-1120
HD현대건설기계	02-479-7837
이스쿠스	044-865-7063
두산밥캣코리아	031-5179-3306
두산밥캣코리아(수소지게차)	1688-6262
볼보그룹코리아(케이블)	02-3780-9206
볼보그룹코리아(배터리)	1644-1172
금강중공업	055-356-8151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지자체별 세부사항) 구매 및 지원 ▶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 ▶ 구매 보조금 지급현황 조회
(지원대상 기종 확인) 구매 및 지원 ▶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 ▶ 구매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 건설기계 판매사별 목록 조회



무공해건설현장 및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제도 안내



무공해건설현장 보조금 지원



지원목적

- 건설공사장 내 무공해건설기계 보급 확산 및 사용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원대상

-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자의 산하기관·공공기관, 그리고 보조 사업자의 관할구역 내 행정·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관급공사)에서 무공해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건설사업자
- 보조사업 대상 공사에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지원대상 무공해건설기계 및 충전시설 등

- 무공해건설기계
 -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사용(배터리형)하거나 외부 전원을 동력으로 사용(케이블형)하는 전기식 건설기계*
 - * 예) 지게차, 굴착기, 쇄석기, 기중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향타·향발기 등 (100% 전동화된 타워크레인 등은 제외)
- 충전시설 등
 - 전기식 건설기계(배터리형·케이블형)에 전기를 충전·공급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설비 (수전설비 등) 및 충전기(이동형은 포함하되, 경유 등을 이용하는 장비는 제외) 등 일체

지원금액

- 무공해건설기계 임대료(운전수 임금, 수송비 등 포함), 충전시설 등 임대료 또는 전기공사 비용, 전기료, 그 밖에 무공해건설기계 사용에 따라 소요되는 필수 부대비용 일체

지원금액

- 건설공사 1개소당 최대 3억원 (국비 50% + 지방비 50%)의 한도 내에서 지급



무공해건설기계 임대료 지원 금액 ('26년 기준)

+ 월 임대료 상한(8시간/일, 25일/월 기준)

구 분	굴착기		지게차		
	배터리형		케이블형	배터리형	
	6톤 미만	20톤 이상	20톤 이상	2~4톤	4~10톤
금액(만원)	1,890	4,510	2,840	1,750	2,010

+ 임대료 산정 기준 :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산정(지자체 승인 시 월 단위 가능)

일 단위 산정	
운영시간	지원 금액
1일 4시간 초과 및 월 25일 이상 운영	월 임대료 전액 지급
1일 4시간 초과 및 월 25일 미만 운영	1일 단위(월 임대료 ÷ 30일)로 지급
1일 4시간 이하 운영	1일 임대료의 70% 지급

※ 건설현장에 투입한 무공해건설기계의 1회 충전 최대 운영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기계별 1회 충전 최대 운영시간 동안 작업한 경우 1일 임대료의 100% 지급

월 단위 산정	
월 누적 운영시간	지원 비율
100시간 초과	100% 지급
60시간 초과 100시간 이하	70% 지급
30시간 초과 60시간 이하	50% 지급
30시간 미만	미지급

+ 무공해건설기계의 1회 충전 최대 운영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월단위 보조금 지급률

월 누적 운영 시간	보조금 지급률
1회 충전 최대 운영시간 x 25일 초과	100%
(1회 충전 최대 운영시간 x 25일) 이하 (1회 충전 최대 운영시간 x 25일) x 0.6 초과	70%
(1회 충전 최대 운영시간 x 25일) x 0.6 이하 (1회 충전 최대 운영시간 x 25일) x 0.3 초과	50%
(1회 충전 최대 운영시간 x 25일) x 0.3 미만	0%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보조금 지원



지원목적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여 무공해건설기계 보급 확산

지원대상

-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

지원기종

- 전기굴착기(배터리형, 케이블형), 수소지게차(들어올림 중량 1.5톤 이상~7톤 미만), 전გი지게차(배터리형)

지원금액

- 전기굴착기 최대 2억원, 수소지게차 최대 1억6천만원, 전기지게차*
 - * 전기지게차 기종별 보조금액은 추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

무공해건설기계 기종별 지원 금액 ('26년 기준)

+ 전기굴착기(배터리형)

제조·수입사	기종	배터리용량(kWh)	정격출력(kW)	총중량(톤)	보조금(만원)
(주)호룡	iX10e	13.0	6.8	0.996	1,090
	iX12e	20.0	6.8	1.375	1,440
	iX17e_A1	30.0	27	1.88	2,000
	iX17e	30.0	27	1.96	2,000
	iX35e	40.0	27	3.95	2,000
이스쿠스	DaVinci10	8.0	19.7	0.997	940
HD현대인프라코어	DX20ZE	20.4	6	1.89	1,590
두산밥캣코리아	E10e	11.52	7.5	1.2	1,050
	E19e	17.28	10	1.92	1,440
볼보그룹코리아	JECR25D	20.0	14.8	2.66	1,720
	JEC230F	447.85	110	23.10	20,000